



정책: 성직자의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하여

Policy: For Clergy Sexual Misconduct
(Korean)

발표 일자:	1993년 3월
개정 일자:	2002년 10월
보완:	2003년 8월
보완:	2006년 8월
보완:	2008년 3월
보완:	2014년 4월



CATHOLIC DIOCESE OF
PITTSBURGH

성직자의 성범죄

교회의 가르침, 특히 성서와 전통에 뿌리를 둔 도덕적 가르침은 이 정책의 기초가 된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된 것이다.

성직자의 보살핌 아래 맡겨진 피츠버그 교구내 모든 신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게 위해,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성직자의 성 범죄 의혹이 보고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본 규정은 교회법과 the Doctrine of the Faith 의 집회에서 발표된 교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보완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것은 또한 the *Charter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he Essential Norms for Diocesan/Eparchial* 에 의해 인정된 미성년 학대 혐의를 다룬 정책에 따른다.

아래와 같은 절차들은 정책과 그것의 적용을 알려 준다:

- **아동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성직자 보살핌 아래 있는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들은 그 어떤 사무 과제보다 첫번째 우선 순위이다.
- **피해자에 대한 배려.** 우리는 항상 학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배려해야 한다.
- **모든 혐의가 보고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학대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담당 행정 당국으로 이관된다.
- **교구 성직자의 적합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있거나 확정된 범죄자는 어떠한 성직자의 역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성직자로 적합한지 결정하는 교회의 역할이다.

이 방침은 매 2년마다 재검토되어 효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성직자 성행위의 심각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고심해야 할 지 노력할 것이다.

이 교구의 정책은 1) 사목의 대응방안과 2) 행정 과정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된다.

I. 사목 활동의 대응방안

피츠버그 교구의 성직자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미성년자¹, 봉사자², 성범죄에 연루된 성직자³에 대한 것이다.

성직자의 성 행위에 대한 합의는 the Vicar for Clergy에 의해 해결된다. 적절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권고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

이 교구 정책의 목적은 성직자의 잘못된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고 교회법의 효과적인 적용에 있다. 성직자에 의한 성범죄의 보고사항에 대한 교구의 신속한 대응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한다:

- A. 성직자에 대한 Vicar의 조사, 그리고 행정 부서에서 혐의 있는 성직자의 적합성에 관한 신뢰 있는 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 의 내용문이 포함된다. (cf. 행정 절차);
- B.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담당 행정 부서로 이관될 것이다; 추가로, 교구는 담당 행정 부서에 보고사항이 잘 보고되도록 지원, 장려 한다;
- C. 지정된 교구 사무실 - 보통 the Vicar for Clergy and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 - 혐의를 받고 있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혐의를 제기한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신고자를 면담하게 된다;
- D. 혐의를 적절한 행정 부서에 넘기는 것뿐 아니라, 인터뷰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직자 임무의 즉각적 철회; (2) 의료 및 심리 평가서 완료; 그리고/또는 (3) 지속적인 치료; (4) 성직자 위원회(the Clergy Task Force)와 독립 심의 위원회(the Independent Review Board) 에 의한 성직자의 혐의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E. 혐의자는 적절한 행정 부서에 이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 F. 신고자, 그의 가족에게 정신적 지원과 필요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 G. 관련된 모든 민사상, 교회법 상의 권리를 알아본다;
- H. 목회 지원팀(Pastoral Support Team)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받은 지역 사회나 교구에 적절한 영적, 심리적 도움을 지원한다;
- I. 교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교구 지원 관리자(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를 배정한다.

주석(Footnotes)

1 성적 학대와 착취를 포함한 미성년(18세 이하) 성범죄자, 아동 포르노물과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물.

교회법에 따르면, 십계명중 제 6계명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바와 같이 문제의 책임은 인간 성 행위에 대한 종교적 명령에서 비롯된 의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미성년 성학대 혐의를 평가하는 것은 제 6계명의 심각한 위반 행동이나 상호작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USCCB, *Canonical Delicts Involving Sexual Misconduct and Dismissal from the Clerical State*, 1995, p.6). 제 6계명에 위반되는 교회법 위반은 완벽한 성행위나 무력이 동원된 물리적 접촉, 식별 가능한 상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부 공격에 의한 도덕적 범죄, 교회법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CIC, c. 1321 §3; CCEO, c. 1414 §2); cf. CIC, canons 1322-27, and CCEO, canons 1413, 1415, and 1416.

- 2 일상 생활과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자기 자신을 관리 할 수 있고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발달 장애, 뇌 손상, 노화 현상에 의한 손상을 지켜낼 수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 3 성 폭행뿐 아니라, 직업상 관계에서 의도적인 성적 접촉과 같은 "성 차별적 성행위" 또한 포함한다. 이것은 교구 직원이나 영적 상담.지도를 담당하는 성직자와의 성적활동을 포함한다.

II. 행정 처리

1 단계

미성년 성범죄나 성인과의 성범죄로 인해 성직자가 고소된 경우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 는 즉시 보고 하고 조사 시작 후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 정책에 제시된 단계는 피고인의 유죄가 추정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A. 이러한 혐의를 받는 성직자는 교구 담당자와 면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와 고소된 성직자에게 혐의의 주장과 내용이 공유되어야 한다.

혐의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담당 행정 당국에 보고된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공식적인 행정 절차는 의혹이 서면으로 확정되었을 때 시작된다.

B. 그 혐의자는 교구 관계자들이(일반적으로 the Vicar for Clergy and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 행한 별도 면담에서 그 혐의의 내용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한다. 혐의자는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소개 받을 수 있고, 선임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전에 반드시 혐의자에게도 고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

C. 혐의자가 종교적 공동체 구성원이거나 교구내 거주자일 경우 the Vicar for Clergy and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 는 혐의를 조사하고 그의 종교적 관리자와 함께 교구 절차를 밟는다. 이런 경우는 혐의자가 종교 공동체의 관할권 안에 속한 경우이다.

D. 정책적 문제로서, 미성년자 성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얼마나 오래 전에 발생했건 상관 없이 담당 행정 부서에 보고 된다.

2 단계

신고자와 혐의자 모두를 면담한 후에 지정된 교구 임원들, 보통 the Vicar for Clergy and the Diocesan Assistance Coordinator, 이 의혹의 신뢰성에 근거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A. 첫번째 시나리오

민간 조사의 결과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주의깊게 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 일은 더이상 추적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사자들에게 이 결정을 통지할 것이다. 성직자를 변호하기 위해, 명예 훼손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B. 두번째 시나리오

혐의자에 대한 예비 수사가 의심스럽거나 진실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혐의자는 면직되고 휴직 처리한다.

1. 혐의는 성직자 대책 위원회(the Clergy Task Force)와 혐의 평가를 위한 독립 검토 위원회(the Independent Review Board) 그리고 성직자 복지 부서(the cleric's fitness for ministry) 에 회부된다.
2. 공식 성찬례 금지, 제의 착용 금지, 특정 지역이나 영토에서의 생활금지, 교구 특권의 폐지와 같이 성직자 사역에서 제한되다.
3. 그 성직자는 교구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가능한 빨리 의료 및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 성직자는 이 평가 결과를 담당 교구 관계자와 함께 치료 시설에도 제공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4. 혐의 조사 과정에 발견되는 적절한 새 정보를 제공한다.

5. 만약 성직자 대책 위원회(the Clergy Task Force)나 독립 검토 위원회(the Independent Review Board)가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그 성직자가 사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주교(the Diocesan Bishop)에게 권고하고, 주교님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다. 혐의 받는 성직자의: 1) 사목 활동 금지; 2) 사제직으로 발생된 의무의 해제; 3) 교구는 정식 절차 시작
6. 혐의가 없음이 판명되었을때, 성직자의 명예 회복이 가능하고 사목으로 복귀될 것이다.

C. 세번째 시나리오

성직자에 의한 성적 학대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교회법에 따라 적절한 조사 후 범죄가 인정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는 영구적으로 제명될 것이고 적절한 교회법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2.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는 예방 목적 뿐 아니라 그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다.
3. 모든 절차는 교회법을 준수해야 하고, 교회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cf. *Canonical Delicts Involving Sexual Misconduct and Dismissal from the Clerical State*, 1995; cf. Letter from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May 18, 2001). 이러한 조항들은 성직자들이 신품 성사의 요구,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교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성직자직 상실, 교회법 의무 사항들을 이행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4.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피고는 민간과 정식 변호사의 조력

을 유지 하도록 권고 받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교구는 교회 법 상담을 제공한다.

5. 그 성직자는 사회 생활의 적응을 위해 지원을 받을 것이다.
6. 성직자 자격 상실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 경우(노령과 병환의 이유로) 그 범죄자는 기도와 고행의 삶을 살게 된다. 그는 공식 미사 집전, 제의 착용 또는 공개적으로 사제임을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III. 독립 검토 위원회 규범/절차

제 1 조 -- 관할권의 정의

1. **범위** - 이러한 절차들은 오직 교구 주교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성범죄 혐의의 진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 또는 사원 수용에 적합한 시기나 교회의 보편적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 이외에도 다른 사목 임무도 제기된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교구 정책의 정례화와 미성년자 성적학대에 대한 절차를 위해 교구 주교를 지원한다.
2. **조치의 한계** - 절차의 평가는 오직 교구 주교나 주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진다.
3. **제외 사항** - 이러한 절차들은 신앙과 도덕의 교리, 사법 절차, 행정적 절차에 의한 벌금의 유효성, 정식 제제의 유효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조 -- 권리와 의무

1. 교회법에 따른 성직자는 이러한 절차의 이행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교회법을 따르는 것은 정직자의 의무이다:
 - a. 이러한 절차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
 - b. 정해진 절차에 따른 요구 사항 진행;
 - c. 정확한 기록 유지;
 - d. 결과를 Vicar for Clergy 에게 위원회 권고 사항과 함께 알린다.

3. 독립 검토 위원회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교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교구 주교에 의해 지명된 평신도(pastor, 신앙심이 깊은 신자)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민법과 인문과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 또는 교구 주교가 지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들은 재생신이 가능한 5년 임기로 임명된다.

4.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때 마다 최소 1명의 Pastor를 포함한 위원회 5명과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치료법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 3 조 -- 평가 과정

1. 위원회는 대리 주교 사제(the Vicar) 에 의해 언급된 사항을 위해 Vicar가 연장 하지 않는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교구 주교에게 담당 Vicar가 임명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2. 대리 주교 사제(Vicar)는 청문회를 위한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고 청문회 개최 최소한 10일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최초 청문회의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기 전에 성직자(혐의자)의 대리인은 대리 주교 사제에게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이 모든 절차에 혐의자를 참여 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4. 모든 진술은 선서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고,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시된 증거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진술은 전체 위원회 참석하에 이루어 진다. 당사자들은 위원회 결정하에 관련성과 중요성 정도 따라 어떤 증거도 제공할 수 있다.
6.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이 과정을 통한 결과물과 권고 사항들을 혐의자의 대리인(The Vicar for Clergy)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권고 사항들은 교구 주교와 모두 공유된다.
7.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한다.

IV. 교회법에 따른 처벌 절차

서문

처벌 진행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과 정의의 근본인 절차를 밟는다. 처벌 과정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1. 서전 조사 ; (c. 1717-1719)
2. 과정의 전개. (c.1720-1728)

행정과 재판 절차(the *Code of Canon Law* 에 의한 고소인, 피고

인, 추문의 정정, 정의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의 두 가지 형태. 처벌 과정은 *the 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 Congregationi Pro Doctrina Fidei Reservatis와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의해 결정된다.

사전 조사

사전 조사 단계에는 두개의 분명한 구성 요소가 있다. 첫번째 구성 요소는 교구 주교 또는 주교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에 의한 조사 :

- 분명한 공격 혐의가 있는가; 정확한 기준 위반;
- 구할 수 있는 증거;
- 공소 시효 (prescription).

민사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피고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모든 과정에서 명예보호를 받는다.

절차의 진행

첫번째 구성요소가 완성되면 교구 주교는 두번째 구성 요소를 결정한다:

1. 특정 범죄 행위가 *The Motu Proprio, 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 Congregationi Pro Doctrina Fidei Reservatis, and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에 따른 신앙의 교리안에 기술된 범죄 중의 하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2. 교구 주교가 적절한 예비 조사를 거친 후에 이 조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을 재판부의 허가하에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로 이관한다.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의 대법원 1등급 판결문에 불리한 주장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절차로 결론을 향해 진행될 것이다.

3. 만약 그 과정이 현지 교구 주교에 의해 처리되도록 지시된다면,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는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진행될 것이다.
4.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에 의해 신도들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 만약 그 과정이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이라면, 교구 주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5. 만약 교구 주교가 행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혐의자에게 증거를 알려 주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기 방어를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만약 교구 주교가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에 기술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로써 사법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법적 대리인에게 정식 청원서를 제출한 공정한 증인에게 수집한 증거를 보내야만 한다. 교구 법정은 the *Code of Canon Law* and the *Motu Proprio, Normae de Gravioribus Delictis Congregationi Pro Doctrina Fidei Reservatis* and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from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에 의해 확립된 절차적 규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ATHOLIC DIOCESE OF PITTSBURGH

111 Boulevard of the Allies
Pittsburgh, PA 15222

©2017